

선 람	기 관 의 장

제1001호 2018. 1. 5.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노티나무

훈 령

- 삼척시 훈령 제277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2
- 삼척시 훈령 제278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8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8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17-102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21
- 삼척시 공고 제15호 2018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 24
- 삼척시 공고 제18호 신조 및 폐기 공인공고 ----- 25
- 삼척시 공고 제25호 2018년도 삼척시민 제안 공모 ----- 27
- 삼척시 공고 제27호 2018년도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등 공고 ----- 30

공 람									
--------	--	--	--	--	--	--	--	--	--

발행 : 문화공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01월 01일

삼 척 시 장

삼척시 훈령 제277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부터 별표6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1]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총괄)

직종	직급	직렬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계	871	459	12	106	83	68	89	54
정무직	계		1	1	-	-	-	-	-	-
	3급상당	시장	1	1	-	-	-	-	-	-
일반직	계		837	455	12	80	79	68	89	54
	4급	소개	3	3	-	-	-	-	-	-
		행정	1	1						
		행정,기술	2	2						
	4~5급	소개	1	-		1				
		기술,보건,간호	1	-		1				
	5급	소개	46	25	3	2	4	2	6	4
		행정	9	8	1	-	-	-	-	-
		복지	-	-						
		해양수산	1	-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3	2		1				
		행정,시설	7	6		1	-	-	-	
		행정,보건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별정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1				1	-	-	
		행정,복지,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행정,보건,시설	1							1
		행정,시설,학예연구관	-				-			
		행정,시설,별정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농업,시설	1				-	1	-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농업,복지,보건	-							
		행정,농업,복지,시설	3				-	3	-	
		행정,농업,보건,환경	1				-	1	-	
		행정,농업,환경,시설	1				-	-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	
	6급	소개	212	118	3	20	17	18	26	10
		행정	54	40	2		3	3	6	-
		세무	1	1						
		전산	1	1						
		사회복지	-	-						
		공업	-				-			
		농업	3	3						
		복지	4	4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식품위생	1			1				

■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1]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총괄)

직종	직급	직렬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의료기술	1			1				
		간호	1			1				
		보건진료	5			5				
		시설	14	9			2	2	1	-
		방송통신	1	1						
		문진	3	2	1					
		행정,세무	10	7				2	1	-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8	8				3	1	6
		행정,공업	7	4			3			
		행정,농업	22	4			-	5	9	4
		행정,복지	3	2			1			
		행정,해양수산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4	4						
		행정,시설	21	13			2	1	5	-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학예연구사	2	1			1			
		시설관리,사무운영	1	1						
		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해양수산연구	1				1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5	4			-	1	-	-
		행정,농업,환경	-				-			
		행정,복지,시설	-	-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시설관리	1					1	-	-
		공업,농업,농촌지도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복지,농촌지도	-			-				
		보건,식품위생,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통신,전화상담,전기운영	1	1						
		건축,기계,열관리운영	1				1			
	7급	소개	262	150	5	30	23	18	24	12
		행정	77	54	3		7	4	2	7
		세무	5	5						
		전산	1	1						
		사회복지	19	8				4	2	5
		시서	1					1	-	0
		공업	9	6			3			
		농업	12	4				1	7	-
		복지	6	6						
		해양수산	7	6			1			

■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1]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총괄)

직종	직급	직명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보건	5			5				
		의료기술	6			6				
		간호	7			7				
		보건진료	1			1				
		환경	4	4						
		시설	27	20			2	2	3	-
		방송통신	4	4						
		간호조무	-			-				
		시설관리	7	2	2		3			
		운전	14	8		3		2	1	-
		건축운영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1			1			
		기계운영	4	1		1	2			
		열관리운영	1	1						
		선박항해운영	-							
		농림운영	1	-		1				
		행정,세무	8	3				1	4	-
		행정,전산	1					1	-	-
		행정,사회복지	3	2				-	1	-
		행정,공업	2	1			1			
		행정,농업	3	1				-	2	-
		행정,시설	4	2			-	-	2	-
		공업,보건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5			5				
		전기운영,농림운영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3	2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복지,시설	1	1						
		공업,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복지,시설	2					2	-	-
		통신,전화상담,전기운영	-	-						
		건축,기계,열관리운영	1				1			
8급	소계		239	122	1	24	24	22	27	19
	행정		82	46	1		6	8	10	11
	세무		7	7						
	전산		2	2						
	사회복지		15	6				-	3	6
	사서		2					2	-	-
	공업		7	3			4	-	-	-
	농업		3	3						
	복지		5	5						
	해양수산		2	1			1			
	보건		8			8				

■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1]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총괄)

직종	직급	직명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6			6				
		간호	3			3				
		환경	4	4						
		시설	21	12			3	2	4	-
		방재안전	2	2						
		방송통신	3	3						
		시설관리	7	3	-	1	3			
		운전	13	3		1		3	6	-
		건축운영	2				2			
		통신운영	-	-						
		전화상담운영	1	1						
		전기운영	1	1			-			
		기계운영	4	-			1	2	1	-
		열관리운영	-				-			
		농림운영	1	1						
		사무운영	2	2						
		행정,세무	9	6				-	3	-
		행정,전산	1	1				-	-	-
		행정,사회복지	4	2				1	-	1
		행정,공업	5	2			3			
		행정,농업	3	2				1	-	-
		행정,복지	1	1						
		행정,환경	2					2	-	-
		행정,시설	4	2			1	-	-	1
		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1	1						
		화공,기계운영	-	-						
		공업,농업,시설	-	-						
		건축,기계,열관리운영	-				-			
		농림운영,시설관리	-				-	-	-	-
		행정,농업,해양수산	-				-	-	-	-
		행정,농업,복지,시설	1					1	-	-
9급	소계		71	36	-	3	9	8	6	9
	행정		21	14			-	-	1	6
	세무		1	1						
	전산		1	1						
	사회복지		7	2				1	2	2
	사서		1					1	-	-
	방호		2				1	-	1	-
	공업		-				-	-	-	-
	농업		5	3				2	-	-
	복지		-	-						
	해양수산		3	1			2	-	-	-
	의료기술		-							
	환경		2	2						

■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별표 1]

삼척시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표(총괄)

직종	직급	직명	합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시설	9	9			-			
		방재안전	-	-						
		방송통신	1	1						
		시설관리	3			1	1	-	1	-
		운전	4	1		1	-	1	1	-
		통신운영	-	-						
		전화상담운영	-	-						
		전기운영	-	-						
		기계운영	-	-						
		사무운영	3	-			3			
		행정,세무	1						1	-
		행정,사회복지	2	1					-	-
		행정,공업	-	-					-	-
		사회복지,환경	1						1	-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시설	1					1		
		전기,기계운영	1					1		
		행정,복지,시설	-	-						
		건축,기계,열관리운영	-	-						
		행정,농업,복지,시설	1						1	-
전문경력관	소계	3	1	-	-	2	-	-		
내군	공연기획홍보원	-	-	-	-	-	-	-		
	예비군중대장	1	1	-	-	-	-	-		
	무대음향	1	-	-	-	1	-	-		
다군	무대기계	1	-	-	-	1	-			
별정직	계	1	1	-	-	-	-			
6급상당	비서	1	1	-	-	-	-			
	계	7	2	-	1	4	-			
연구직	연구관	소계	1	-	-	1	-			
		확예연구	1	-	-	1	-			
	연구사	소계	6	2	-	3	-			
		확예연구	2	1	-	1	-			
		기록연구	1	1	-	-	-			
		농업연구	1	-	-	1	-			
		해양수산연구	1	-	-	1	-			
지도직	계	25	-	-	25	-	-			
	지도관	농촌지도	3	-	-	3	-			
	지도사	농촌지도	22	-	-	22	-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8년 01월 01일

삼척시장

삼척시 훈령 제278호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삼척시 공문서 배부번호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배부처기관별 기관번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배부처기관별	기관번호
실·과	노(1-25) 기획감사실 1, 문화공보실 2, 에너지전략실 3, 총무과 4, 세무과 5, 회계과 6, 주민생활지원과 7, 사회복지과 8, 민원봉사과 9, 평생교육과 10, 환경보호과 11, 관광정책과 12, 특화산업과 13, 일자리경제과 14, 안전총괄과 15, 자원개발과 16, 농정과 17, 축산과 18, 산림과 19, 건설과 20, 도시과 21, 공원녹지와 22, 교통행정과 23, 건축과 24, 해양수산과 25
읍·면·동·출장소	도(1-13) 도계읍 1, 원덕읍 2, 근덕면 3, 하장면 4, 노곡면 5, 미로면 6, 가곡면 7, 신기면 8, 남양동 9, 성내동 10, 교동 11, 정라동 12, 임원출장소 13
사업소	로(1-11) 농촌지원과 1, 교육연구과 2, 보건정책과 3, 건강증진과 4, 상하수도사업소 5, 수산자원센터 6, 문화예술센터 7, 대이동골관광센터 8, 해양관광센터 9, 도계보건출장소 10, 원덕보건출장소 11

- ② 삼척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 ③ 삼척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 ④ 삼척시 사고대책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한다.
- ⑤ 삼척시 기획조정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지역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한다.
- ⑥ 삼척시 기획조정협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 ⑦ 삼척시 읍·면·동 행정실적 심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 ⑧ 삼척시 행정자료실 운영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중 “자치행정과장에게 구입요구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에게 구입요구하고 총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 ⑨ 삼척시 행정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 ⑩ 삼척시 행정관리 통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 ⑪ 삼척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 ⑫ 삼척시 청원경찰 징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 ⑬ 삼척시 공무국외여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 ⑭ 삼척시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 ⑮ 삼척시 부동산 권리의무증서 보관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 ⑯ 삼척시 기업투자유치 성과금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5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 ⑰ 삼척시 민방공정보단말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은”을 “총무과장은”으로, “자치행정과장을”을 “총무과장을”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호 본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 ⑱ 삼척시 사고대책본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6호 중 “산림녹지과”를 “산림과”로 한다.

[별표]

기관별 담당의 명칭 및 직렬·직급(제4조 관련)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계		203 담당		
의회 (2)	의회사무과 (2)	의사담당	지방행정주사	
		의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본청 (112)	기획감사실 (6)	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예산담당	지방행정주사	
		감사담당	지방행정주사	
		성장기반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심사통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법제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문화공보실 (5)	문화예술담당	지방행정주사
		문화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학예연구사	
		공보담당	지방행정주사	
		체육진흥담당	지방행정주사	
		체육시설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에너지전략실 (4)	신산업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신재생에너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에너지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에너지시설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자치행정국 (49)	총무과 (7)	서무담당	지방행정주사
			자치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인사담당	지방행정주사
			후생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올림픽담당	지방행정주사
전산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전산주사	
정보통신담당			지방방송통신주사	
세무과 (6)			세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징수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세입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세외수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회계과 (3)	세무조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재산과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경리담당	지방행정주사
		계약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주민생활지원과 (4)	재산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복지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희망복지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통합조사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사회복지과 (6)	생활보장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경로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여성가족담당	지방행정주사
		아동보육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드림스타트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청소년담당	지방행정주사
	민원봉사과 (6)	장애인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가족관계등록담당	지방행정주사
		토지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지적담당	지방시설주사
		지적정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평생교육과 (4)	지적조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교육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책읽는도시담당	지방행정주사	
	평생학습관담당	지방행정주사	
환경보호과 (5)	여성새일센터담당	지방행정주사	
	환경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환경지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생활환경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오수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환경시설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관광정책과 (4)	관광기획담당	관광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관광홍보담당	지방행정주사	
		관광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관광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특화산업과 (4)	특화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도시재생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특화개발담당	지방시설주사	
		시설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경제건설국 (48)	일자리경제과 (5)	일자리경제담당	지방행정주사
			시장육성담당	지방행정주사
			기업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지역에너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광물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안전총괄과 (5)	안전총괄담당	지방행정주사
			복구지원담당	지방시설주사
			안전도시담당	지방행정주사
민방위담당			지방행정주사	
영상정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방송통신주사	
자원개발과 (4)		개발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지역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시설담당	지방시설주사	
		시설운영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농정과 (4)		농정기획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농촌개발담당	지방농업주사	
	농산지원담당	지방농업주사		
	원예특작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축산과 (3)	축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축산경영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가축방역담당	지방농업주사		
산림과 (5)	자원조성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산림보호담당	지방녹지주사		
	산림휴양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산림경영담당	지방녹지주사	
		산불방지담당	지방녹지주사	
	건설과 (4)	건설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토목담당	지방시설주사	
		하천담당	지방시설주사	
		기반조성담당	지방시설주사	
	도시과 (4)	도시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도시계획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도시개발담당	지방시설주사	
		도시디자인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공원녹지과 (3)	공원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녹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수변공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녹지주사	
	교통행정과 (3)	교통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교통지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차량등록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건축과 (4)	건축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건축담당	지방시설주사	
		주택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해양수산과 (4)	건축물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수산정책담당		지방해양수산주사		
수산진흥담당		지방해양수산주사		
어업지원담당		지방해양수산주사		
직속 기관 (20)	농업 기술 센터 (9)	연안보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지원기획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농촌지원담당	지방농촌지도사	
		기술지도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농기계담당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서부지소장	지방농촌지도사	
		교육연구과 (4)	관리담당	지방농촌지도사
			교육담당	지방농촌지도사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연구담당	지방농촌지도사
			생태공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보건소 (11)	보건정책과 (7)	보건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보건주사	
		위생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식품위생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의약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진료지원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감염병관리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도계보건출장소장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원덕보건출장소장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건강증진과 (4)	건강증진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가족건강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방문보건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건강관리담당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의료기술주사 또는 지방간호주사	
	사업소 (14)	상하수도사업소 (6)	수도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수도시설담당			지방시설주사	
마을상수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하수행정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하수시설담당			지방시설주사	
시설운영담당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수산자원센터 (2)		내수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돌기해삼담당	지방해양수산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연구사	
문화예술센터 (2)		문화예술회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박물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학예연구사	
대이동골관광센터 (1)		관리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해양관광센터 (3)		레일바이크담당	지방행정주사	
		해신당공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복지주사	
		해상케이블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캠핑장운영담당	지방행정주사		
읍면동 (54)	도계읍 (10)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재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맞춤형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환경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건설담당	지방시설주사	
		도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수도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원덕읍 (8)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재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맞춤형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건설담당	지방시설주사			
근덕면 (6)	도시환경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임원출장소장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재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맞춤형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하장면 (4)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개발담당	지방시설주사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노곡면 (4)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부서별	담당명칭	직렬 및 직급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미로면 (4)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가곡면 (4)	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총무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세무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신기면 (4)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산업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개발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
남양동 (2)	행정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맞춤형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성내동 (3)	행정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맞춤형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교동 (2)	행정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맞춤형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정리동 (3)	행정민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주민생활지원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맞춤형복지담당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사회복지주사

삼척시 고시 제2018 - 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 등의 사유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18. 01. 05.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34 외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 01. 0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비고
		주소	고시일	사유	고시일	부여 사유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53-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34	2018010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2	강원도 삼척시 교동 769-8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2길 18 (교동)	20180105	건물신축	20090626	택지지역내주요시설물(청솔, 석미아파트)명칭, 일련번호활용(청석로분기)	
3		이	하	여	백		
4							
5							
6							
7							
8							
9							
10							

도로명주소 부여 내역

구분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지	건					
부여	1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리 253-5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용화길 27-34	2	20180105	건물신축	20090626	행정구역명사용	택지지역내주요시설물(청솔, 석미아파트)명칭, 일련번호활용(청석로분기)
부여	2	강원도 삼척시 교동 769-8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2길 18 (교동)	2	20180105	건물신축	20090626		

삼척시 공고 제2017-1029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였으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계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계시판 및 홈페이지
- 2. 공고기간 : 2017.12.29. ~ 2018.01.12(15일간)
- 3. 말소일자 : 2017.12.29.
-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	성명(명칭)	김만○
	주소 (대장상주소)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자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궁촌리 437-2	
	목조 (1층:56.7㎡ 주택)	
마.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부서(☎033-570-39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2. 29.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 관리부서
- 연 락 처 : 033)570-3965

삼척시 공고 제 2018 - 15호

2018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공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18년도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1월 3일

삼 척 시 장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대상 주민총수

(2017. 12. 31.기준, 단위 : 명)

19세이상 주민수(A)				선거권 없는자(B)			연서대상 주민총수 (A-B)	공표일	공표방법
계	주민 등록	국내거소 신 고 재외국민	3년경과 등 록 외국인	계	주민 등록	국내거소 신 고 재외국민			
58,898	59,410	57	53	56	56	-	58,842	2018. 1. 3.	삼척시보, 홈페이지

※ 「삼척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폐 및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상
청구요건 : 연서대상 주민총수의 1/50 이상 서명 (1,177명)

삼척시 공고 제2018-18호

신조 및 폐기 공인공고

삼척시공인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등록된 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4일

삼척시장

- 등록 사유 : 2018. 1. 1. 일자 행정기구 개편
- 등록 연월일 : 2018. 1. 4.
-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등록사유	비고
신조 공인	삼척시일자리경제과 분임재무관인	2.1cm * 2.1cm (정방형)		2018.01.01.일자 행정기구개편	
	삼척시일자리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1.8cm (정방형)			
	삼척시일자리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 1.8cm (정방형)			

○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분	공인명	규격	인영	폐기사유	비고
폐기 공인	삼척시지역경제과 분임재무관인	2.1cm * 2.1cm (정방형)		2018.01.01.일자 행정기구개편	
	삼척시지역경제과 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 1.8cm (정방형)			
	삼척시지역경제과 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 1.8cm (정방형)			

삼척시 공고 제 2018-25 호

2018년도 삼척시민 제안 공모

삼척시에서는 「시민중심! 행복삼척」 실현을 목표로 시민들의 참신하고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9일

삼척시장

「시민중심! 행복삼척」 실현을 위한 시민제안 공모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삼척시"

『시민중심! 행복삼척』 실현을 위한 정책, 시민 여러분의 제안에서 시작됩니다.

2018. 1. 10.(수) ~ 2018. 11. 12.(월) 까지 「시민중심! 행복삼척」 실현을 위한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 * 우수제안자에게는 표창 및 부상금 지급합니다.
- * 동일한 내용은 우선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모자격은

- ✓ 시에 주민등록 또는 본적이 있는 사람
- ✓ 시 관내에 직장이 있는 사람
- ✓ 시 관내에 주둔한 군인 및 관내 학교 학생
- ✓ 필요한 경우 시 이외에 거주하는 사람

제안 분야는

경제, 사회, 교육, 복지, 문화, 체육, 안전 분야를 망라하여 시정 시책의 발전방향이나 주민편의제공 등 시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는 모두 환영합니다.

-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책 또는 제도개선사항
- 행정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제고를 위한 방안
- 시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방안
- 각종 불합리한 제도나 법규에 대한 개선방안
- 기타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제안 심사절차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제안자·공동제안자 인적사항 및 기여도(%), 제안제목,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등 작성
- 제출기관 : 삼척시청
- ✓ 제안 신청
 - 인터넷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공모제안
 - 삼척시청(www.samcheok.go.kr) 시민참여-시민제안

- 우 편 :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교동)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제안담당자 앞 (033-570-3715)
- F A X : (033) 570-3131
- 방 문 : 삼척시청 기획감사실

2단계 관련부서 검토 (1차)

- 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 및 의견조정
- 심사기준 : 창의성, 경제성 및 능률성, 실용성 등

3단계 시장조정위원회 심사 (2차)

- 1차 검토의견서에 의거 서면심사

4단계 제안심사위원회 심사 (3차)

- 청안등급 결정
- 심사발표 : 2018. 12. 31. 삼척시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시상 규모

- 시상시기 : 2018. 12. 31.
-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삼척시민제안규정에 따라 포상

✓ 삼척시민제안 시상금 기준

제안등급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노력상
부상금 (만원)	300~600	200~300	100~200	50~100	10~50
특별상	2차 심의 탈락자 삼척시랑상품권 20,000원 지급				

* 청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 공지,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을 취득하였거나 계류 중인 것
- 이미 채택된 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불만의 표시
- 연구비 등을 보조받아 산출된 연구 결과물
- 기업 및 개인의 특정제품, 사업홍보와 관련된 것 등

✓ 음모된 제안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채택된 제안에 대한 제안권리는 삼척시에 귀속됩니다.

✓ 제안내용의 표절 등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시상금은 환수조치 됩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삼척시청 기획감사실(☎033-570-37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수신 : 삼척시장

접수번호

제안제목			
제안종류	<input type="checkbox"/> 자유제안 <input type="checkbox"/> 지정제안		
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여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	팩스번호
공동제안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기여도(%)

「삼척시민 제안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기타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 작성요령 >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지정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 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방법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삼척시 공고 제2018-27호

「주민투표법」 제9조 제4항,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삼척시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 서명인수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18년 1월 5일

삼척시장

1. 2018년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② 청구 서명인수
58,899	7,363

①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 국 인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삼척시에 등록이 되어있는 영주 체류자격을 갖춘 19세 이상의 외국인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청구 서명인수

- ▶ 투표청구 서명인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2. 2018년도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및 청구서명인수

① 삼척시장

① 청구권자 총 수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서명인 수	서 명 인 수	읍면동별 최소 서명인수		지역균형요건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 수	청구권자 총 수 의 15 / 100
			읍면동	최 소 서명인수	하한 (5/10000)	상한 (100/10000)		
58,895	8,835 이 상	4개 읍면동 이 상	도계읍	589	30	589	10,763	1,615
			원덕읍	589			5,006	751
			근덕면	589			5,182	778
			하장면	195			1,296	195
			노곡면	110			728	110
			미로면	276			1,834	276
			가곡면	103			686	103
			신기면	96			635	96
			남양동	589			7,686	1,153
			성내동	589			7,525	1,129
			교 동	589			8,929	1,340
			정라동	589			8,625	1,294

①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 국 인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삼척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 ▶ 1/3 이상(4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0/10,000 이하 범위에서 15/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 산정된 서명인 수가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인 경우에는 5/10,000로하고, 100/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10,000으로 함.

② 삼척시의원

선거구	① 청구권자 총 수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비 고	
		서명인 수	서 명 인 수	읍면동별 최소 서명인수		지역균형요건		읍면동별 청구권자 총 수	청구권자 총 수 의 20 / 100
				읍면동	최 소 서명인수	하한 (5/10000)	상한 (100/10000)		
“가” 선거구	29,739	5,948 이 상	2개 읍면동 이 상	도계읍	298	15	298	10,763	2,153
				하장면	260			1,296	260
				미로면	298			1,834	367
				신기면	127			635	127
				남양동	298			7,686	1,538
				성내동	298			7,525	1,505
“나” 선거구	29,156	5,832 이 상	2개 읍면동 이 상	원덕읍	292	15	292	5,006	1,002
				근덕면	292			5,182	1,037
				노곡면	146			728	146
				가곡면	138			686	138
				교 동	292			8,929	1,786
				정라동	292			8,625	1,725

①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주민등록자 + 외국인)

- ▶ 주민등록자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삼척시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9세 이상의 주민
- ▶ 외 국 인 : 2017년 12월 31일 기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9세 이상의 외국인 중 삼척시 관할구역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 ※ 공직선거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 제외

②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수

- ▶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 ▶ 1/3 이상(2개 이상)의 읍면동에서 받아야 할 최소 서명인수
 -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이상, 100/10,000 이하 범위에서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 산정된 서명인 수가 선거구안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5/10,000 미만인 경우에는 5/10,000로하고, 100/10,0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10,000으로 함.